

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

확 인 요 청 자	성 명		생년월일				
	주 소		전화번호				
확 인 자	성 명		생년월일				
	주 소		전화번호				
승선 사실							
선명	어선번호	톤수	선적항	어업허가	승선기간 월 일 ~ 월 일 ()	어선원재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 (○・×)	지급 어선원 임금 (천원)
합계					()		(천원)

「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승선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확인자 (인)

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	확인	읍장 · 면장 · 동장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※ 확인자는 아래의 내용을 읽고 [] 확인란에 V 표시합니다.

「수산업·어촌 공익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호에 따라 공익직접
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
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[] 확인

확인자 (인)